

삼일PwC 거버넌스센터

거버넌스

트렌드 리포트 2023 Vol.1

상장사 감사위원회 현황과 동향 분석



삼일회계법인



Contents

1. 구성	4	4. 활동성	14
2. 독립성	8	5. 운영	20
3. 전문성	9	* 부록	28

기술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삼일회계법인의 정책이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들어가며

삼일PwC 거버넌스센터는 매년 감사위원회의 구성을 비롯하여 전문성, 독립성, 활동성 등의 측면에서 현황과 변화 추세를 분석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그 5번째 해이다. 상법과 자본시장법의 개정으로 장기 재직 감사위원이 감소하고 여성 감사위원이 늘었으며, 공시 강화에 따라 감사위원의 교육 비율이 높아진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그러나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이나 활동성의 측면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감지되지는 않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관행이 자리잡고 있는 듯하다. 감사위원회 지원 조직인 내부감사부서의 기능 강화와 독립성 제고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더딘 점은 특히 아쉬운 부분이다. 또한, 기업 규모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지속되고 있으며, 내부감사기구의 형태에 따른 차이도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발견할 수 있었다.

분석 대상은 2022년말 자산총액 기준으로 1조 원 이상 상장기업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259개 사(비금융업 214개 사, 금융업 45개 사)와 동 회사에 소속된 감사위원이다. 2022년 감사위원으로 활동한 사외이사는 총 855명(비금융업 714명, 금융업 141명), 2023년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는 187명(비금융업 140명, 금융업 47명), 중도 사임 또는 종임된 사외이사는 226명(비금융업 174명, 금융업 52명)이다.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¹	자산총액 2조 원 미만 1조 원 이상 ²	계
비금융	140	74	214
금융	41	4	45
계	181	78	259

한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중 내부감사기구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자산총액 2조 원 미만 기업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비율은 60%로 지난해와 동일한 비율을 보였다. 보다 정교한 분석을 위해서 감사를 설치한 회사는 본문의 분석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부록에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와의 차이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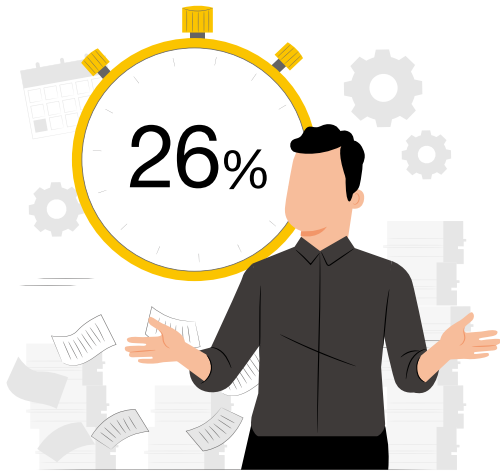
1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금융회사 중 감사가 설치된 중소기업은행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2 자산총액 2조 원 미만 1조 원 이상인 회사 중 감사를 설치한 회사 53개 사(비금융 52개 사, 금융 1개 사)는 제외함.

Key Findings

부정 관련 안건을 다룬 감사위원회 비율

적시성 있는 논의를 위한
안건 점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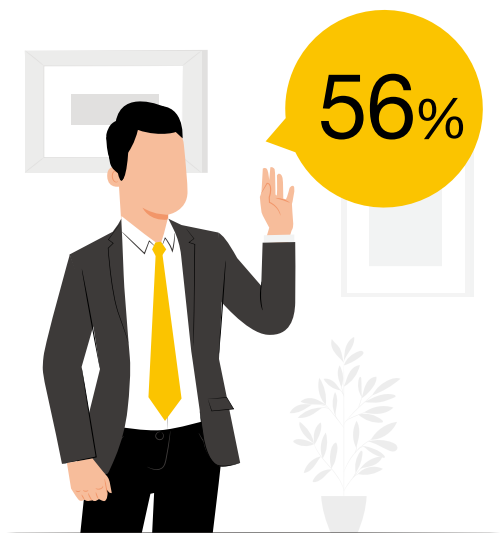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외부감사인과 양방향의 충분하고
적극적인 논의 중요



전원 남성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비율

다양성 제고를 위한 고려 필요



내부감사기구의 형태에 따른 차이 (부록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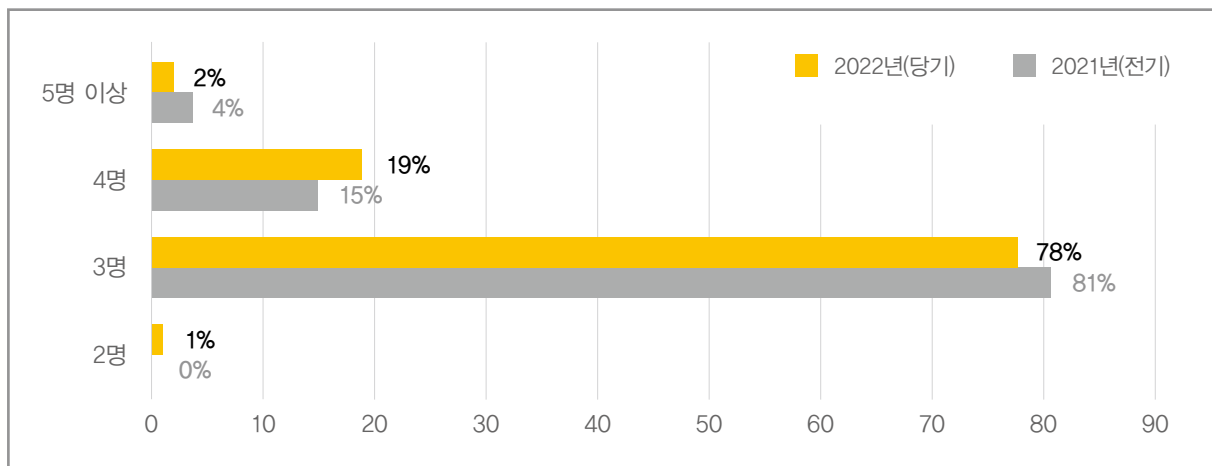
*회사가 제공했다는 의미, 모든 감사위원이 교육에 참여한 것은 아님.

1. 구성

1) 구성원 수

78%(전기: 81%)의 회사가 3명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4명인 회사가 19%(전기: 15%), 5명 이상인 회사가 2%(전기: 4%)로 나타났다. 최대 6인으로 구성된 1개 사도 찾을 수 있었다. 감사위원회 인원수는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경우 27%(전기: 21%)의 기업이 4명 이상 이었고, 2조 원 미만 1조 원 이상 기업의 경우 12%로 전기와 동일한 수준에 머물렀다.

감사위원회 구성원 수



삼일PwC 코멘트

우리나라 상법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2/3 이상 사외이사로 구성된 3인 이상의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것으로 요구하며, 미국의 상장 규정(NYSE)은 모든 상장사에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3인 이상의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므로, 규모 면에서는 요구하는 바가 동일하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감사위원회는 3~6명으로 구성되며 4명이 가장 일반적이다. 4명의 인원을 너무 적지도 많지도 않은 적절한 인원수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적절한 감사위원회 규모는 효율적인 토론을 촉진하고, 원활한 감사위원회 일정 수립과 효율적인 감사위원 승계 계획에 도움이 된다.

예상치 못한 감사위원의 사임이 발생하는 경우, 구성원이 4명이라면 법정 요건인 3명의 구성원을 채워야 하는 긴급한 상황을 피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이유로 감사위원회에는 최소한 두 명의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두는 것이 좋다.

상법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인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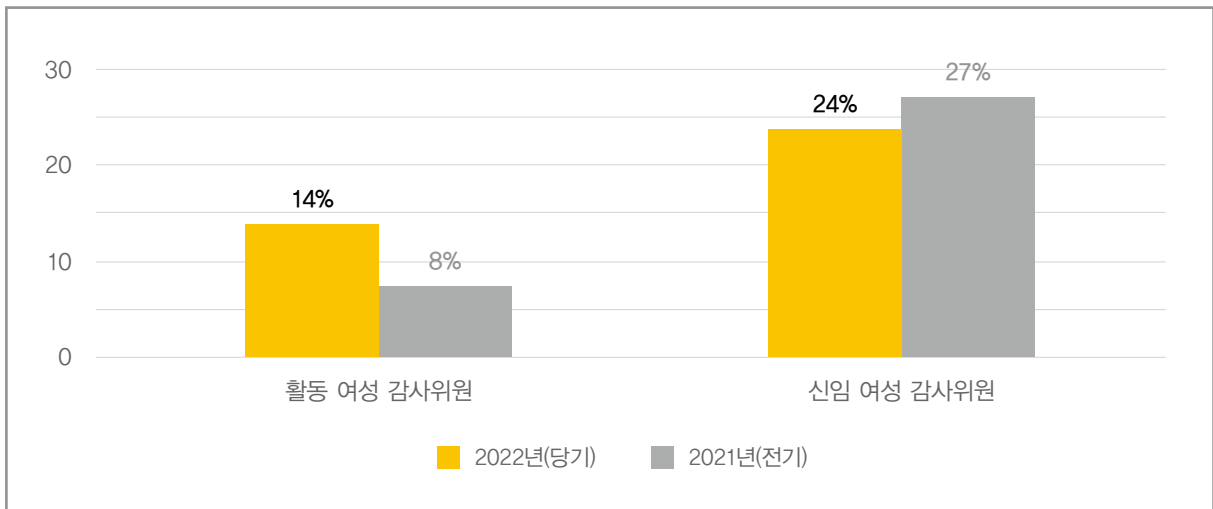
2) 성별

감사위원회의 성별 다양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의 개정으로 2조 원 이상 상장사의 경우 최소 1인의 여성 이사를 두어야 하는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022년에 활동했던 여성 감사위원의 비율은 14%로 전기(8%)의 두 배에 가까운 비율이지만 절대적 수치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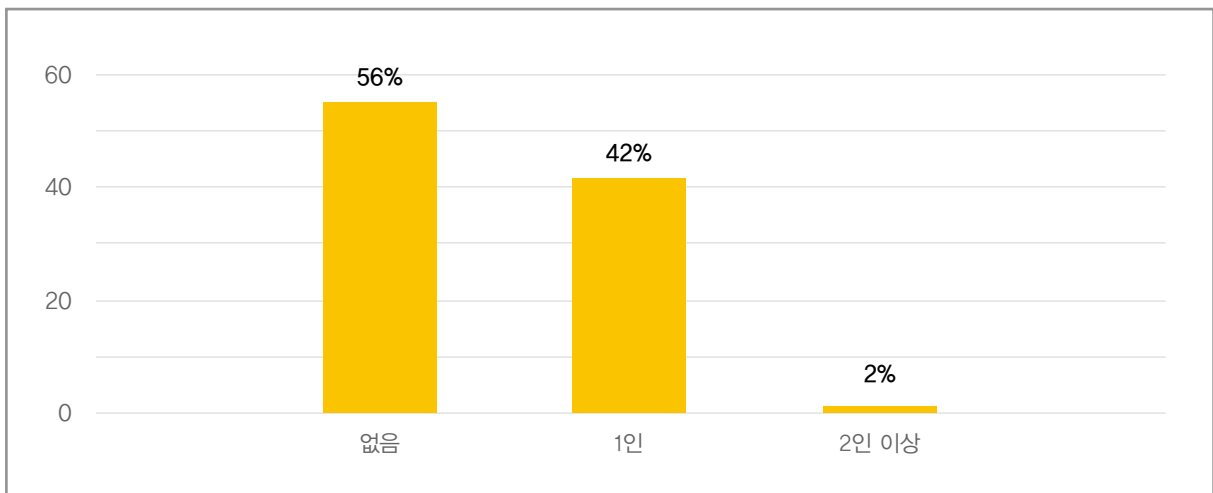
또한, 여성 감사위원 비율은 규모별 차이도 컸는데, 2조 원 이상 기업의 경우 17%, 2조 원 미만 1조 원 이상 기업의 경우 6%로 나타났다. 이사회에 최소 1인 이상의 여성 이사를 두도록 한 개정 자본시장법이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에만 의무화되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신규로 선임된 감사위원 중 24%가 여성으로 전기(27%)보다 다소 감소하였다. 규모별로 나누어 보면 2조 원 이상 26%, 2조 원 미만 1조 원 이상 18%의 비율로 여성 감사위원을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감사위원 비율



여성 감사위원 수 기준 회사 분포



여성 감사위원의 수에 따른 회사 분포를 살펴보면, 여성 감사위원이 없는 회사가 56%에 달했고, 1인 인 회사가 42%를 차지했다. 2인 이상, 3인 이상인 회사는 각각 5개 사, 1개 사로 소수에 그쳤다.



삼일PwC 코멘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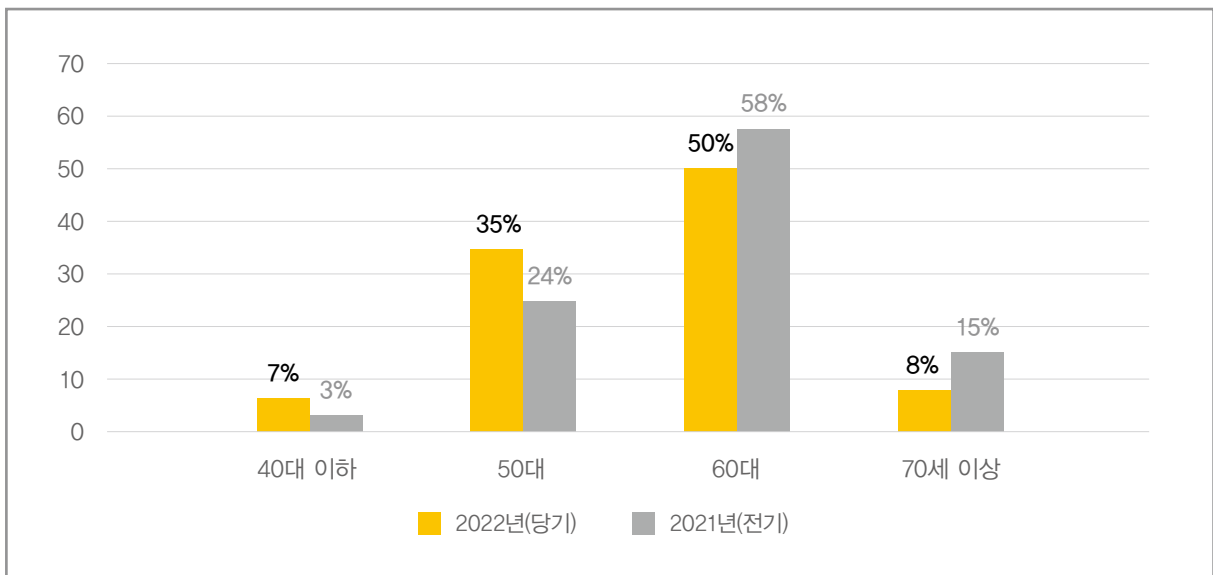
다양성에 있어 가장 앞서가는 곳은 유럽이다. 최근 유럽¹은 모든 상장기업에게 사외이사의 40%를 여성으로 구성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는, 사내이사까지 포함한 전체 이사회 기준으로 33% 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으며, 2026년 6월 말까지 이사회 여성 비율을 맞춰야 한다. 의무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벌금형을 부과하거나 명단 공개 등을 할 수 있으며, 기업들은 이사회 성비 정보를 매년 주기적으로 감독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현재 유럽 상장기업의 이사회 내 여성 이사 비율은 45%인 프랑스를 비롯하여 평균 30% 정도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이번 법제화는 유럽 전반의 다양성 증진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차원에서 이해관계자의 다양성에 대한 기대치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1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improving the gender balance among non-executive directors of companies listed on stock exchanges and related measu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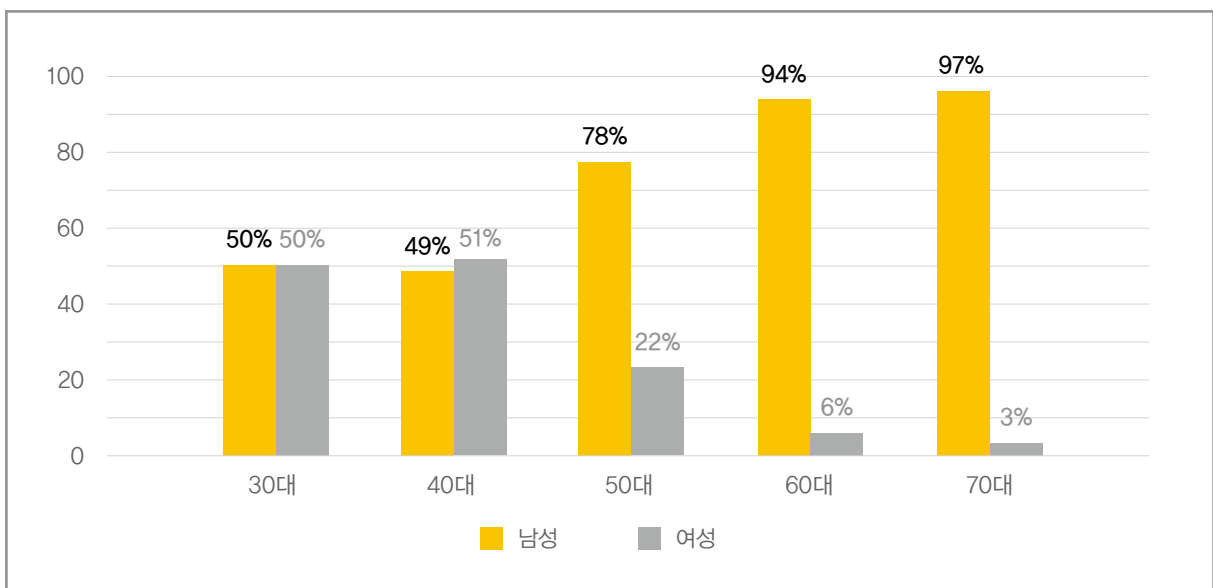
3) 연령

2022년에 활동한 감사위원의 평균 연령은 60세(전기: 63세)로 나타났다. 감사위원의 연령은 60대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50대 순이었고 50대의 비중이 늘어나며 평균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성별로 구분한 결과, 30, 40대의 구간에서는 남녀 성비가 유사하였으나 50대 이후부터는 급격한 차이를 보여, 대부분이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상대적으로 여성 이사 후보자를 찾기 쉽지 않았음을 짐작하게 하는 결과이며, 반대로 낮은 연령대에서 유사한 성비를 보인다는 것은 향후 감사위원회의 다양성이 보다 용이하게 개선될 가능성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감사위원 연령 분포



감사위원 성별 연령 분포



2. 독립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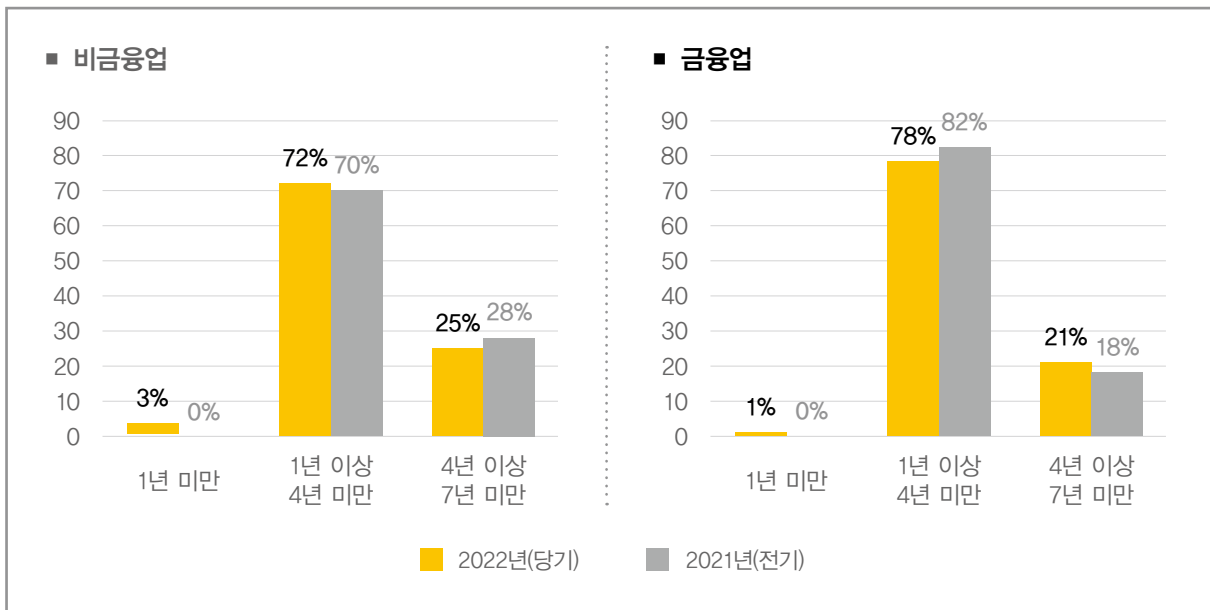
1) 사외이사 구성 비중

분석 대상 기업 259개 사(전기: 228개 사) 중 비금융회사 7곳(전기: 7곳)과 금융회사 4곳(전기: 2곳)을 제외하고는 모든 감사위원회가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되어 감사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할 것을 권고하는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의 내용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다.

2) 재직기간

감사위원의 대부분이 사외이사이므로 사외이사 관련 법규가 감사위원 재직기간에 영향을 주었다. 2020년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당 상장사 6년, 해당 상장사와 계열사를 포함하여 9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할 수 없게 되었고 금융사지배구조법도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다.

감사위원 재직기간



* 전기에는 7년 이상 재직 이사가 2%를 차지했으나 그래프에서 제외함.

분석 대상 기업에서 2022년에 활동한 감사위원은 평균 2.8년 정도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 전기와 동일했다. 업종별로는 비금융회사 2.8년(전기: 2.9년), 금융회사 2.7년(전기: 2.4년)으로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기간별 분포에서는 가장 많은 감사위원이 1년 이상 4년 미만의 기간 동안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전문성

상법이 감사위원에게 적용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의 요건을 과거 경력 위주로 제시하는 것에 더하여,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은 실질적인 감독 업무 수행 능력에 기반하여 감사위원의 전문성을 판단하도록 한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회계 또는 재무 전문성에 대한 공시가 강화되어, 과거에 비해 보다 상세한 내용이 공시된다. 회사는 사업보고서에 각 감사위원이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인지 여부와 해당하는 상법상 전문가 유형, 전문성과 관련된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경력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즉, 회사의 외부 이해관계자가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늘어난 상황이다.

1) 감사위원 경력 현황

2022년 비금융회사에서 감사위원으로 활동한 사외이사 714명(전기: 576명)의 주요 경력 분포를 보면 학계 출신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학계 출신 감사위원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회계 전공 7%(전기: 8%), 재무 전공 3%(전기: 3%), 그 외 전공 22%(전기: 22%)로 모두 32%(전기: 33%)를 차지하여 전기와 유사하다. 그 다음 순위는 법률전문가 18%로 전기보다 2% 포인트 증가, 관료는 16%로 전기에 비해 3% 포인트 감소하여 약간의 변동을 보였다.

금융회사의 경우 회계사(8%) 및 법률전문가(18%) 출신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모습을 보였으며, 학계 출신의 감사위원은 31%로 8% 포인트 감소하였다. 관료 출신의 감사위원도 전기보다 2% 포인트 감소하여 16%의 비율을 보였다.

감사위원 경력 현황

■ 비금융업

(% 반올림)

	회계사	회계학 교수	CFO 등 ⁽¹⁾	재무학 교수	금융기관 출신	경영진 ⁽²⁾	학계 (기타) ⁽³⁾	관료	법률 전문가 ⁽⁴⁾	기타
2022 (총 714명)	76명	48명	10명	20명	58명	64명	157명	115명	131명	35명
	11%	7%	1%	3%	8%	9%	22%	16%	18%	5%
2021 (총 576명)	48명	47명	12명	16명	49명	49명	126명	111명	92명	26명
	8%	8%	2%	3%	8%	8%	22%	19%	16%	5%
2020 (총 563명)	42명	38명	17명	15명	46명	45명	127명	110명	92명	31명
	7%	7%	3%	3%	8%	8%	23%	20%	16%	5%

■ 금융업

(% 반올림)

	회계사	회계학 교수	CFO 등 ⁽¹⁾	재무학 교수	금융기관 출신	경영진 ⁽²⁾	학계 (기타) ⁽³⁾	관료	법률 전문가 ⁽⁴⁾	기타
2022 (총 141명)	11명	12명	1명	12명	25명	7명	19명	22명	25명	7명
	8%	9%	1%	9%	18%	5%	13%	16%	18%	5%
2021 (총 133명)	7명	15명	1명	14명	22명	6명	23명	24명	16명	5명
	5%	11%	1%	11%	17%	5%	17%	18%	12%	4%
2020 (총 133명)	9명	7명	2명	12명	17명	4명	21명	36명	20명	5명
	7%	5%	2%	9%	13%	3%	16%	27%	15%	3%

(*) 동 표는 각 감사위원의 최근 경력을 기준으로 1인 1개 범주로 분류하였으나, 아래 '2021년 상법상 범주에 따른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는 회사의 공시에 따라 중복 공시도 포함하여 분류하였음.

- (1) 재무팀장, 재무 관련 임원 포함
- (2) CFO 등에 포함되는 경영진 제외
- (3) 회계 또는 재무 전공 제외
- (4) 판사, 검사 변호사 및 법학 전공 교수



삼일PwC 코멘트

미국 주요 회사의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²는 새로운 산업의 등장과 복잡하고 다양해진 기업의 거래 및 위험 요소, 디지털 기술 활용의 확대와 고도화 등 최근의 경영 환경을 반영하고 있어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검토하는 데 참고할 만하다.

감사위원회가 보유한 전문성은 회계 또는 재무(93%), 산업(76%), 위험 관리(75%), 운영(73%), 준법(63%), 사이버 보안(41%) 및 그 외 기술(48%)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업종별로 유사한 비중을 보였다.

그런데 효과적인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위해 보충해야 할 전문성에 대한 감사위원들의 의견은 비금융업과 금융업 간 큰 차이를 보였다. 비금융업의 경우 산업 전문성(33%)을 가장 높은 비율로 꼽은 반면, 금융업의 경우 사이버 보안과 그 외 기술(83%)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한편, 93%의 비율이 회계 또는 재무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답했으나, 추가적인 회계 또는 재무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20%로 낮지 않은 수준이었다.

2 Center for Audit Quality, Audit Committee Practices Report: Priorities and Committee Composition, 2023.1

2)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현황

감사위원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상법이 요구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인 경우 사업보고서에 관련 경력을 포함한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2022년에 활동한 비금융업 감사위원 714명(전기: 576명) 중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분류된 감사위원은 282명(전기: 240명)으로 39%(전기: 42%)를 차지하여 전기 대비 다소 감소하였다. 전문가 유형은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2조 원 이상 기업의 경우 회계·재무분야 학위보유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2조 원 미만 기업의 경우 금융기관·정부·증권유관기관 등 경력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상법상 범주³에 따른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⁴

(% 반올림)

	자산 2조 원 이상		자산 2조 원 미만*
	비금융업	금융업	
회계사(1호 유형)	26%	20%	28%
회계·재무 분야 학위 보유자(2호 유형)	37%	46%	21%
상장회사 회계·재무 분야 경력자(3호 유형)	7%	2%	5%
금융기관·정부·증권유관기관 등 경력자(4호 유형)	30%	33%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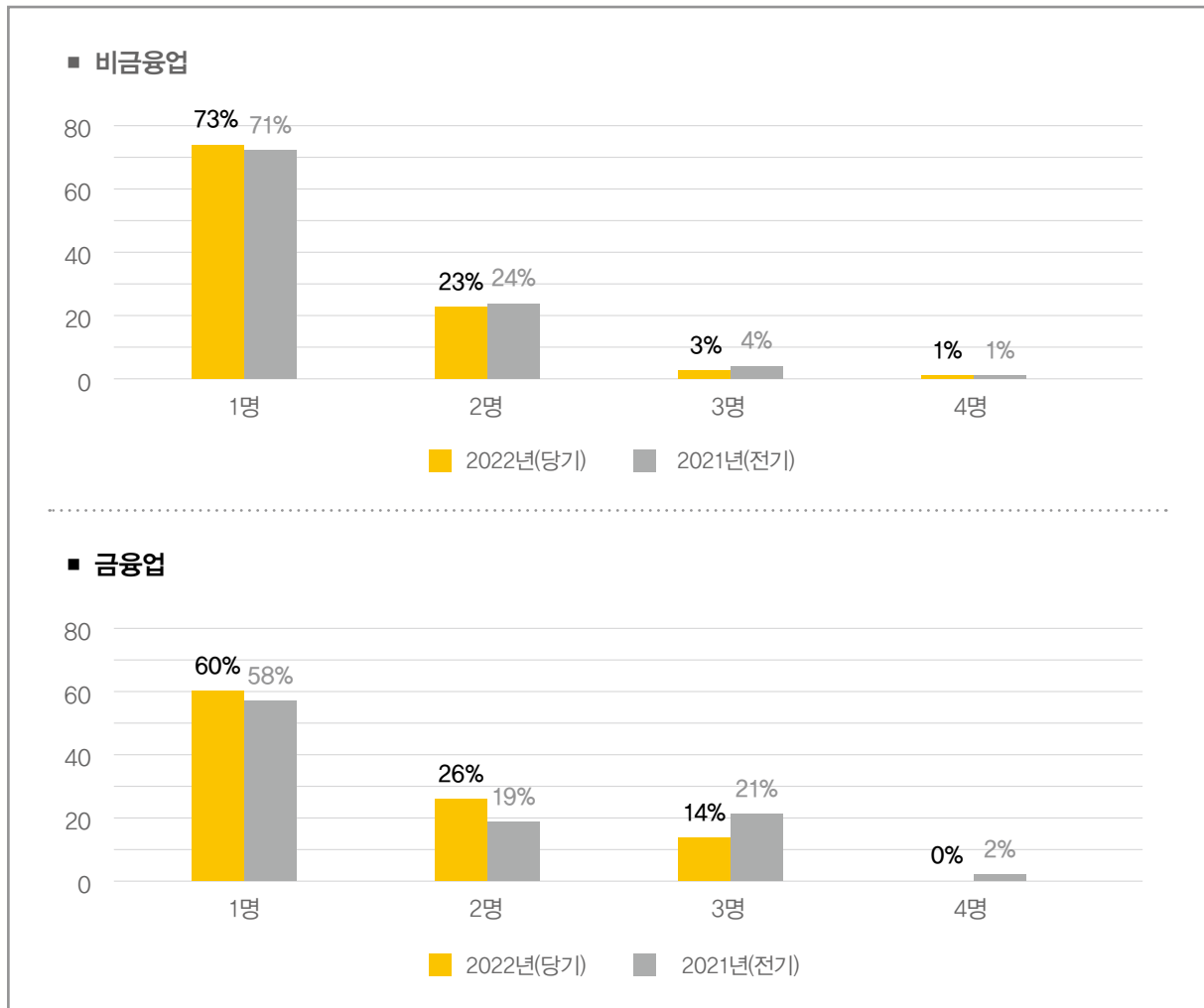
* 자산 2조 원 미만 기업의 경우 금융회사가 4개 사에 불과하여 업종을 구분하지 않음.

업종과 규모를 불문하고 1인의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보유한 감사위원회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전기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비금융업의 경우 27%(전기: 29%), 금융업의 경우 40%(전기: 42%) 이상의 회사가 2인 이상의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기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다.

3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및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구분

4 회사의 공시에 따라 중복 공시도 포함하여 분류하였음. 단, 경력이 중복되더라도 1개의 범주로만 공시하는 회사도 있음.

회계 또는 전문가 수



비금융업의 경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기업은 27%(전기: 33%)의 기업이, 2조 원 미만 1조 원 이상 기업은 26%(전기: 19%)의 기업이 2인 이상의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규모에 따른 차이는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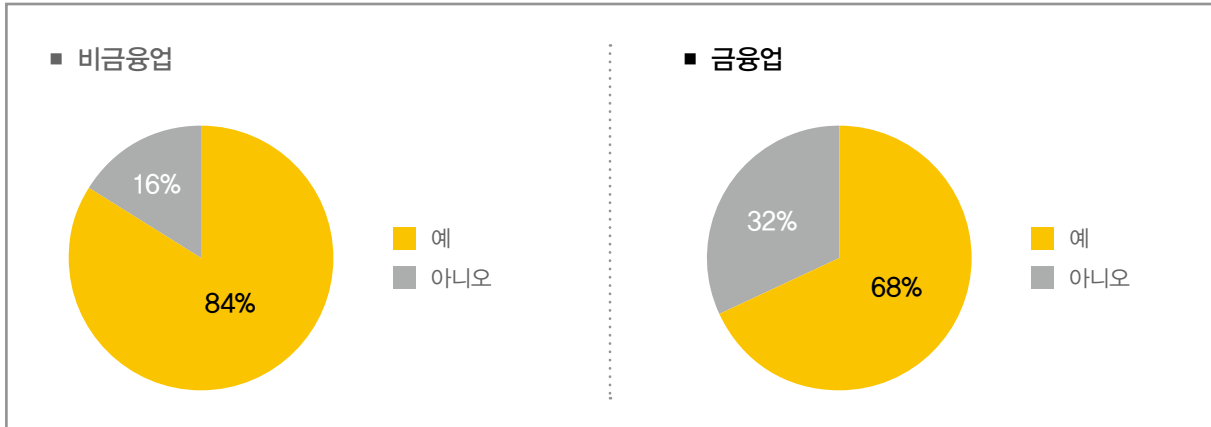
삼일PwC 코멘트

미국 주요 회사의 경우 3명 이상의 재무 전문가를 포함하는 비율이 42%로 나타나 국내 현황과 큰 차이를 보인다⁵. 이는 법규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준을 넘어서,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미국 상장 규정(NYSE)은 감사위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재무정보에 대한 이해력(financially literate)을 갖추고 있거나, 최소한 감사위원이 된 후 일정 기간 내에 충족할 것을 요구하며, 최소한 1명 이상이 회계 또는 재무 전문지식(accounting and related financial expertise)을 보유할 것을 요구한다. 한편, 감사위원의 과거 경력은 CFO, CEO 등의 C-level 경영진 및 감사인 출신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은퇴 후 또는 전문적으로 사외이사 직을 수행하고 있는 비율이 32%였다.

3) 감사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은 위원장이 감사위원회 업무에 대하여 회계 또는 재무와 관련된 상당한 수준의 지식을 갖출 것을 권장한다. 비금융업의 경우 84%(전기: 80%)의 회사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인 감사위원회 위원장을 두었으며, 금융업의 경우 68%(전기: 72.5%)로 약간 낮은 비율을 보였다.

감사위원회 위원장 -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여부



삼일PwC 코멘트

감사위원회에 1인의 회계 및 재무 전문가만 있고, 그 사람이 위원장인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위원장은 회계 및 재무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논의에 집중해야 하지만, 회의를 지배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동일한 수준의 깊은 재무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다른 영역에서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한 감사위원은 감사위원회 논의의 효과와 감독 역할을 개선하는 데 귀중한 관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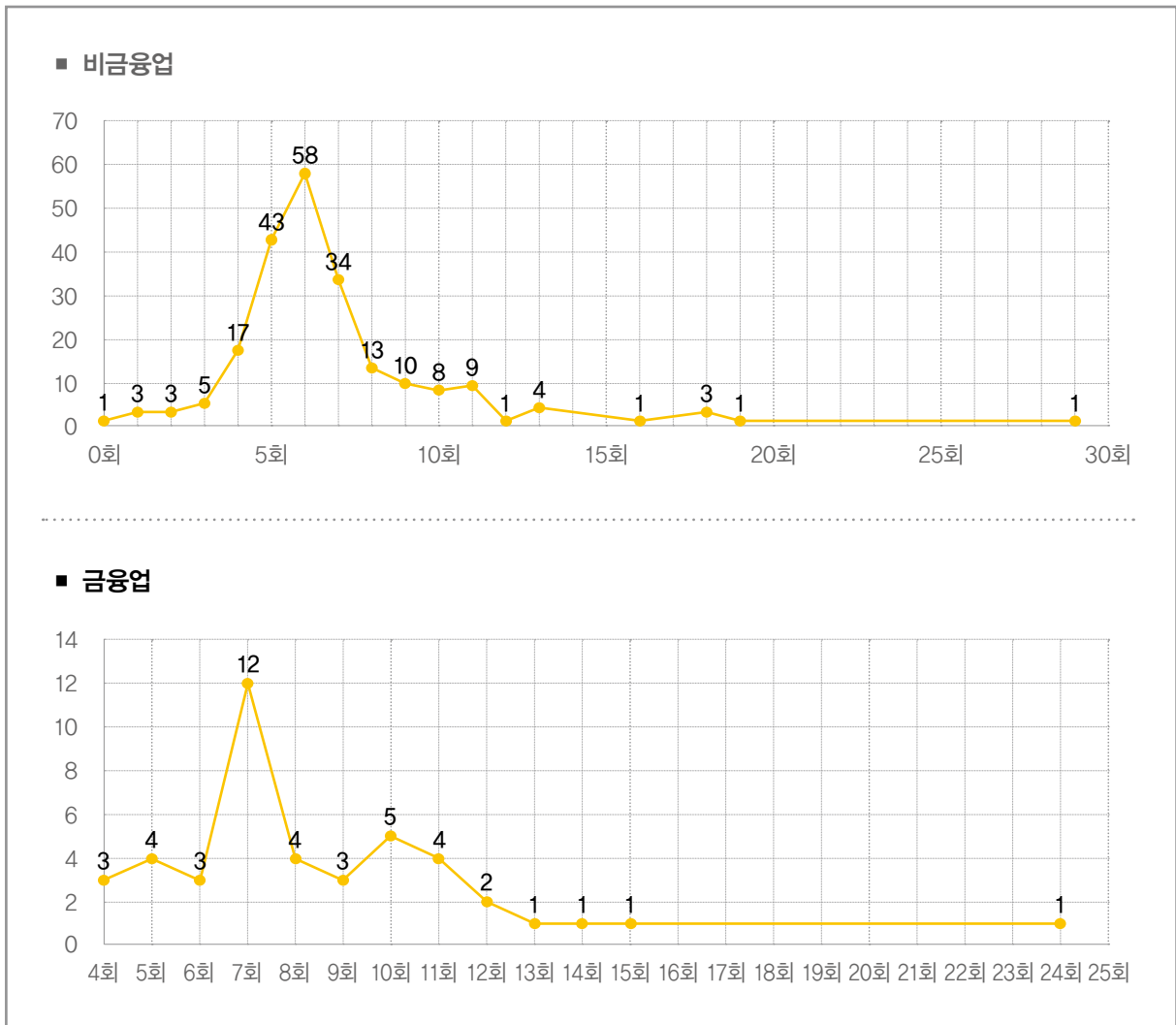
4. 활동성

1) 감사위원회 회의

회의는 감사위원회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이다. 회의의 사전 준비, 진행 방식, 소요 시간, 회의 참석자 등 여러 요인에 의해 회의 활동의 실효성이 달라질 수 있으나, 회의 횟수는 감사위원회 활동의 객관적인 측정치로서 의미를 갖는다.

분석 대상 기업 중 비금융회사의 감사위원회는 2022년에 평균 6.7번(전기:6.4번)의 회의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 평균 8.6번(전기:8번) 회의를 개최한 금융회사와 차이를 보였다. 회의 횟수도 기업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자산총액 2조 원 미만 1조 원 이상 기업의 경우 5.8번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나 7.6번인 2조 원 이상 기업에 비해 횟수가 적었다.

감사위원회 회의 횟수 분포



감사위원별 회의 출석률은 비금융회사의 경우 90%(전기:92%)의 감사위원이 100%의 출석률을 보였고 금융회사의 감사위원 86%(전기:98%)가 100% 출석률을 보였다.

비금융회사의 감사위원회 회의에서는 연평균 19.7개(전기: 17.3개)의 안건을 논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회의 당 평균 2.9개(전기: 2.7개) 정도의 안건을 다루었다.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정보에 따르면, 총 안건 중 결의 사항의 비중은 34.9%(전기: 32.1%)였다. 금융회사의 경우 연평균 32.7개(전기: 26.4개)의 안건을 논의하여 회의 당 평균 3.8개(전기: 3.4개) 정도의 안건을 다루었으며, 총 안건 중 결의를 필요로 하는 항목의 비중은 40.8%(전기: 43.3%)였다⁶.



삼일PwC 코멘트

감사위원회는 법규상 요구 사항과 감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한정된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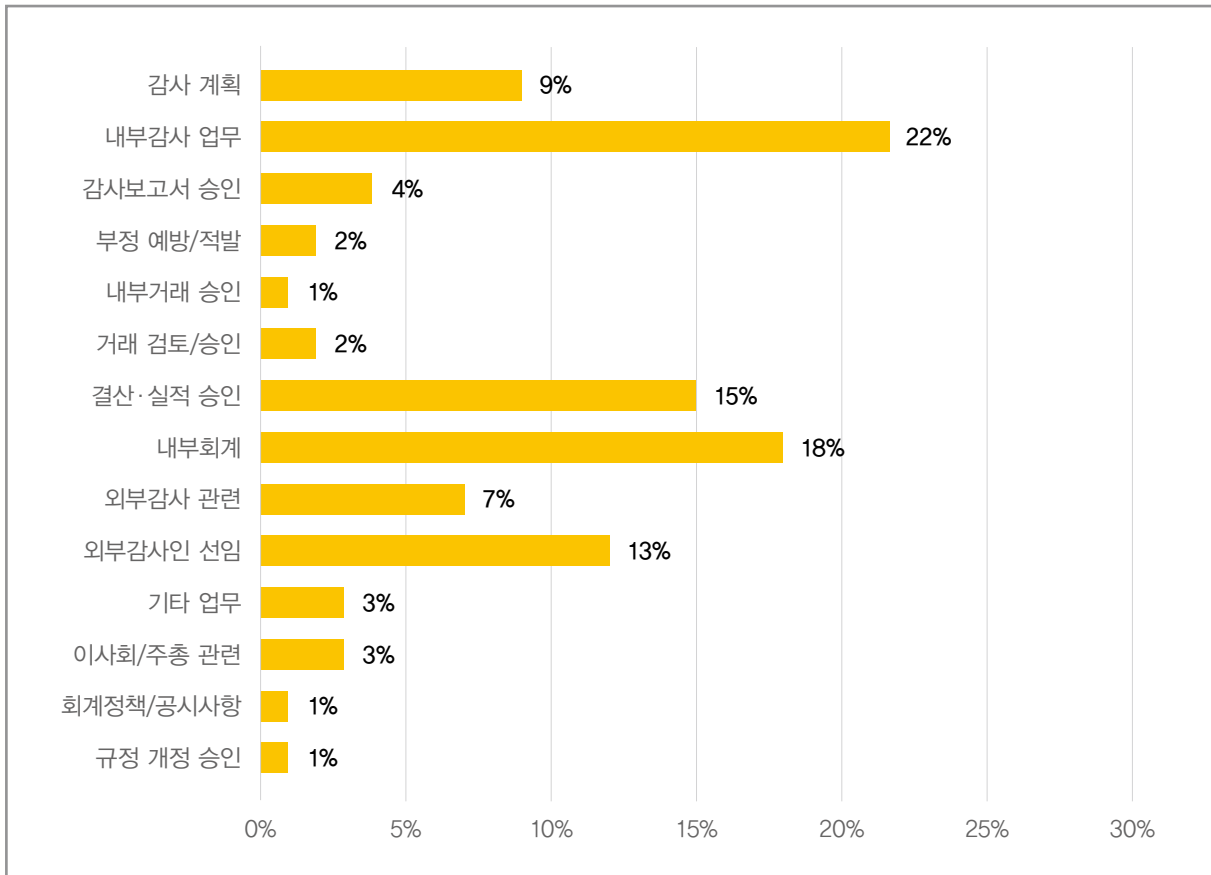
- 감사위원회는 경영진 연락 담당자를 지정하여 안건을 선정 및 조정하는 역할을 맡기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경영지원담당 임원, 내부감사책임자 등이 책임자가 될 수 있다.
- 감사위원회 규정을 안건 계획의 출발점으로 삼고, 규정이 정하는 바를 완전성 있게 안건에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 매년 초 예정된 모든 회의에 대해 회의별로 안건과 시간 배분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안건은 매년 반복되므로, 법규 개정과 같이 새롭고 중요한 현안에는 충분한 시간이 배정될 수 있도록 고려한다.

6 결의 안건을 구분 표시하지 않은 회사는 제외하고 분석함.

업종별 차이와 더불어 규모에 따른 차이도 나타났다. 비금융업의 경우 2조 원 이상 기업은 연평균 22.4개(전기: 19개)의 안건을 다룬데 반해, 2조 원 미만 기업은 8.6개(전기: 14개)의 안건을 다루었다. 다만 2조 원 이상 대규모 기업의 경우 회의 횟수도 더 많았기 때문에 회의 당 안건은 3.8개(전기: 2.9개)로 3.7개(전기: 2.4개)인 2조 원 미만 기업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감사위원회 안건

(% 반올림)



감사위원회 회의에서는 내부감사 업무, 내부회계, 결산/실적, 외부감사인 선임 등 법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안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내부감사 업무는 자체적으로 수행한 업무감사, 특별감사 결과 보고 및 감사 관련 인원의 선임 등을 포함하며, 내부회계 업무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계획과 운영실태 평가 및 평가보고서 승인을, 결산/실적 승인은 결산주기별 재무제표 결산 보고와 영업보고서 승인 등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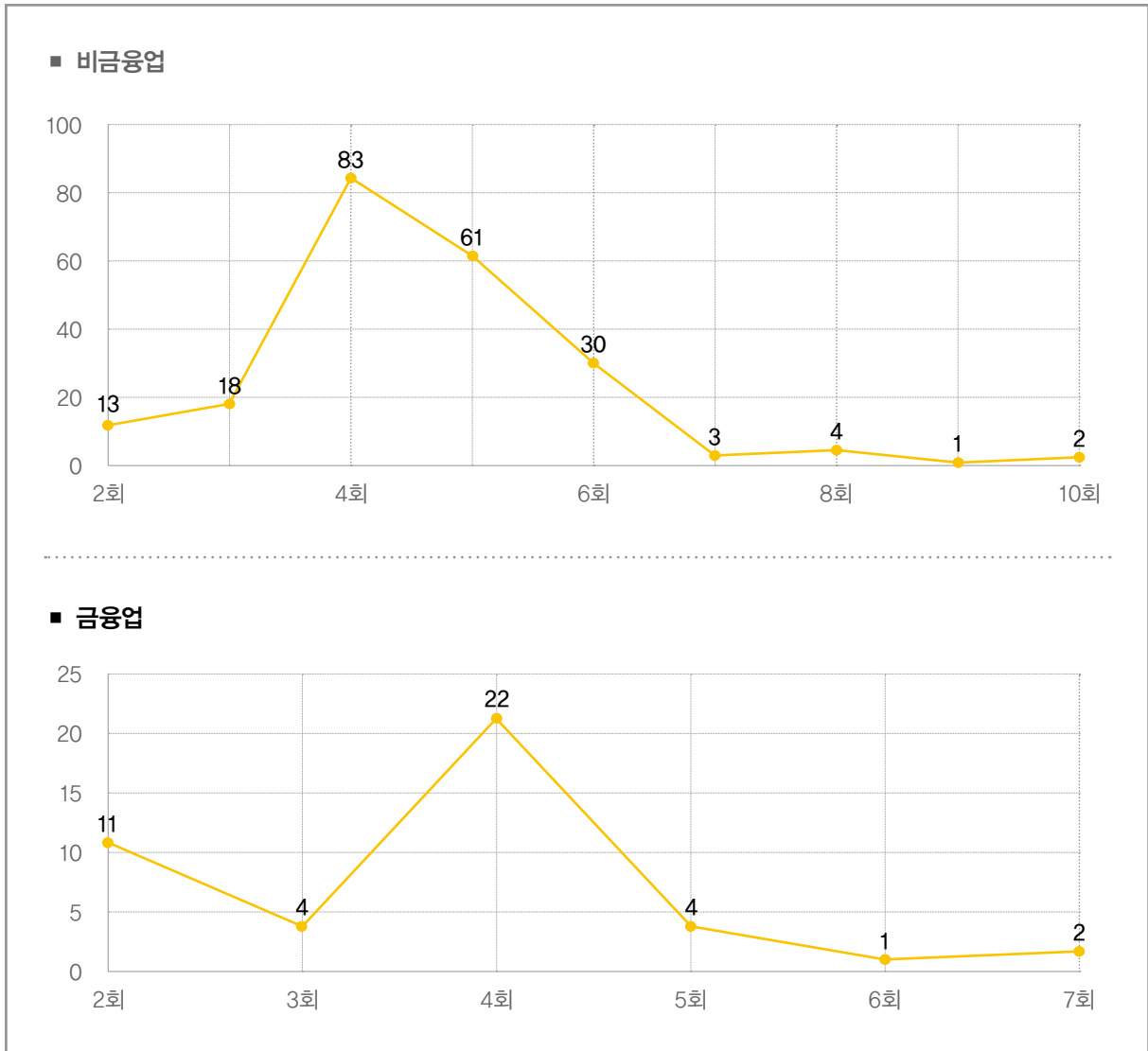
그러나 작년 한 해 대표적인 이슈였던 부정 및 횡령과 이와 관련된 회사의 위험, 내부통제 점검 등이 감사위원회에서 다루어진 비중이 높지 않았다. 부정 관련 안건을 다룬 회사는 26% 정도로 낮은 비율을 보였으며⁷, 전체 안건에서 부정 관련 주제가 차지하는 비율은 2%에 불과했다.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기구로서 기업의 위험 관리와 감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정기적이고 정형화된 안건 외에 적시성 있게 다루어야 할 안건을 발굴하고 감사위원회 논의에서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7 부정 예방 및 적발, 내부신고, 윤리 경영 등의 안건을 다룬 회사의 비율이다.

2) 외부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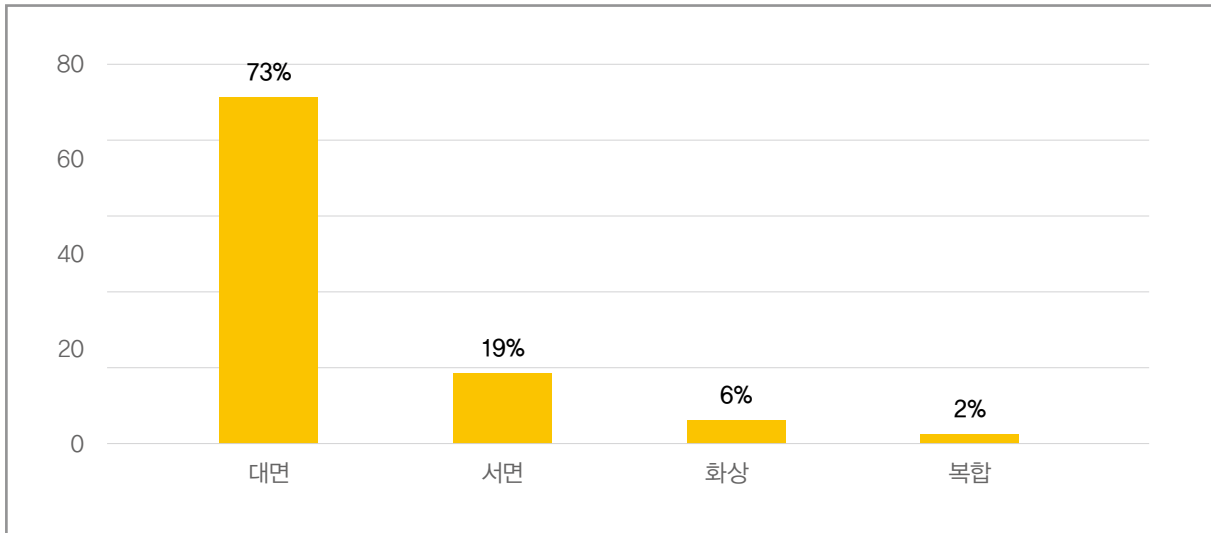
분석 대상 기업 중 비금융회사는 4.6회(전기: 4.6회), 금융회사는 평균 3.7회(전기: 3.6회)의 커뮤니케이션을 외부감사인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 분기별 1회 정도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중 가장 적게 커뮤니케이션한 감사위원회는 2회(전기: 2회), 가장 많이 커뮤니케이션한 감사위원회는 총 10회(전기: 10회)에 걸쳐 커뮤니케이션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 횟수 분포



대부분의 커뮤니케이션에 감사위원회 구성원과 회계법인의 업무수행이사가 참여하였다. 비금융회사의 경우 재무담당이사(임원) 또는 재무팀이 참여하였다고 공시한 기업은 총 29개(전기:19개)였다. 동 29개 사 중 2개 사의 경우 모든 커뮤니케이션에 재무담당이사(임원) 또는 재무팀이 포함되어, 경영진의 참석 없이 진행되는 커뮤니케이션이 수행되지 않아 회의 관행에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반면, 금융회사는 재무담당인원이 포함되었다고 기재한 곳이 없었다.

커뮤니케이션 유형별 비율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대면 회의의 빈도가 가장 높고, 서면, 화상, 복합(두 가지 이상의 유형을 동시에 활용하는 유형) 유형이 그 뒤를 이었다. 연중 단일 유형의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한 경우는 대면 46%, 서면 9%, 화상 2%였는데,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솔직한 논의를 통해 이슈를 파악하고 조기에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감안할 때 서면으로만 커뮤니케이션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⁸.

월별 커뮤니케이션 수행 빈도를 살펴본 결과, 주로 감사종료 보고가 수행되는 2월과 3월에 가장 빈도가 높았고, 감사 계획의 공유와 분·반기 검토 보고가 수행되는 4-5월, 7-8월, 10-11월 그리고 중간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결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11-12월에 커뮤니케이션 빈도가 높았다.

8 회계감사기준은 지배기구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효과적인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은 다음 사항에 대한 도움을 준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 (a) 감사인과 지배기구가 감사에 관련된 사항을 이해하고 건설적인 업무관계를 수립함. 이러한 관계는 감사인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발전된다.
- (b) 감사인이 지배기구로부터 감사와 관련된 정보를 입수함. 예를 들어, 지배기구는 감사인이 기업과 그 환경을 이해하고, 감사증거의 적절한 원천을 식별하며, 구체적인 거래나 사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 감사인을 도울 수 있다.
- (c) 지배기구가 재무보고절차를 감시하는 책임을 완수함으로써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감소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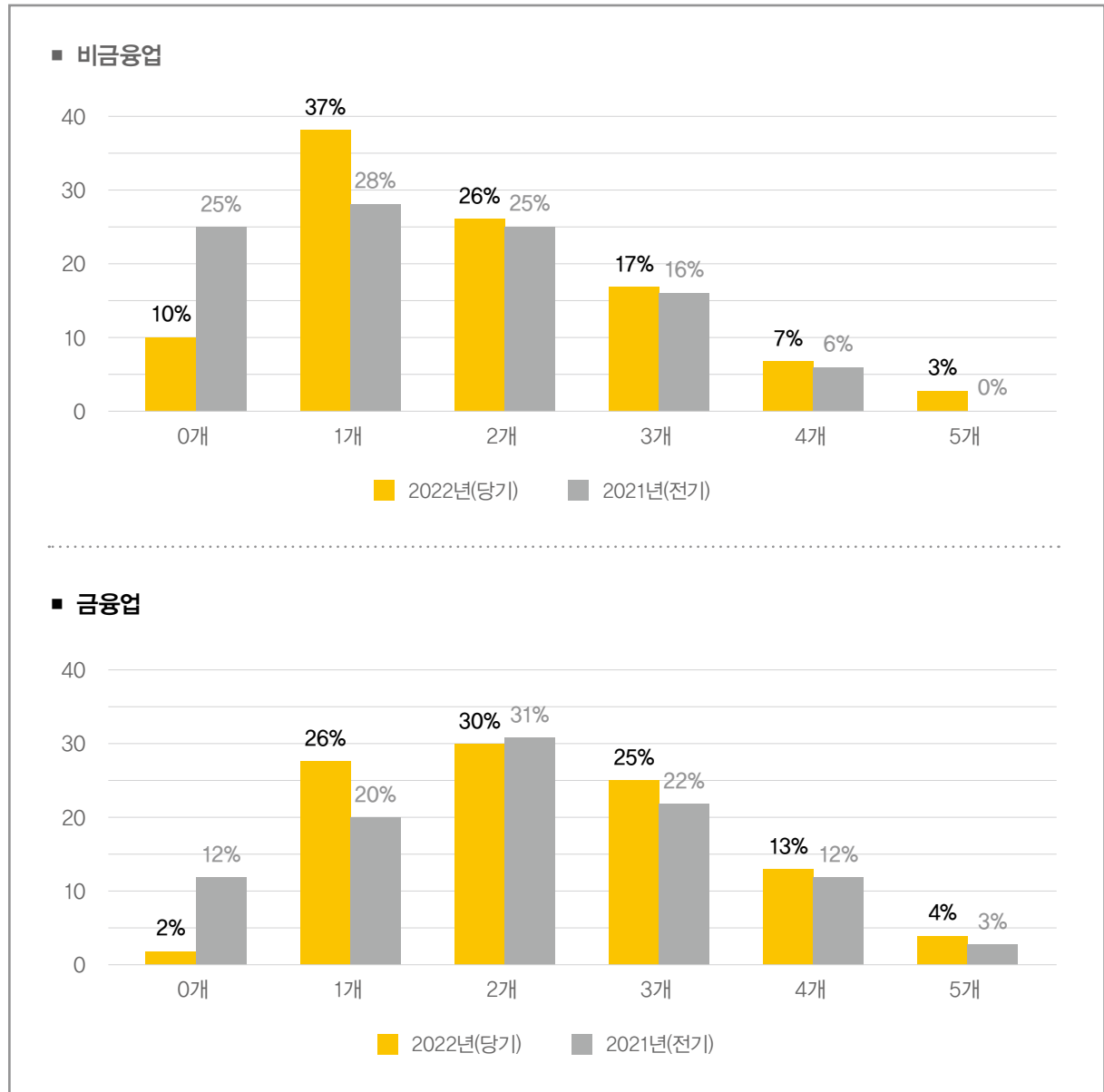
3) 감사위원의 타 위원회 활동

비금융회사의 경우 27%(전기: 22%)의 감사위원이 감사위원회를 제외하고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소속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융회사의 경우 그 비율이 42%(전기: 37%)로 전기에 비해 증가하였다. 반면, 감사위원회에만 참여하는 경우는 비금융업 10%(전기:25%), 금융업 2%(전기:12%)로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감사위원의 업무량이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사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위원회가 운영되지만, 감사위원회는 법규에서 정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임무도 수행해야 하므로 업무에 과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타 위원회 소속

(% 반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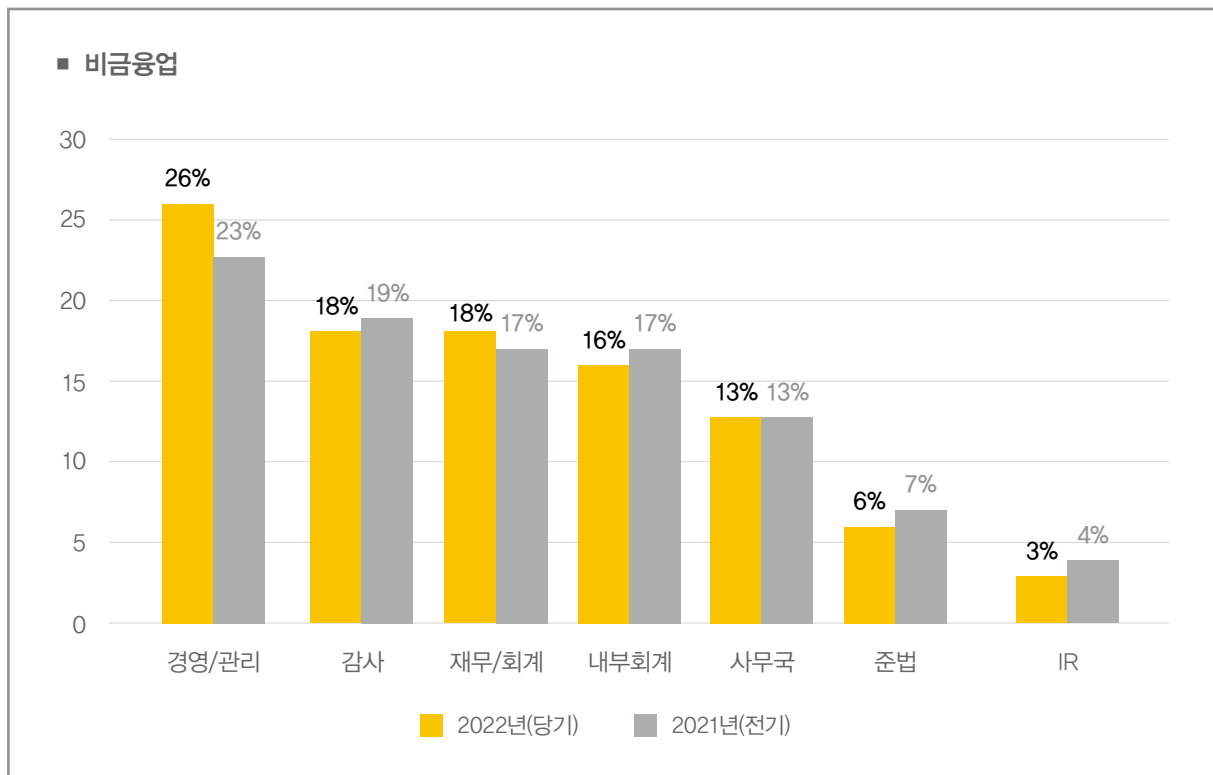
5. 운영

1) 감사위원회 지원 조직

감사위원회를 보좌하고 감사 실무를 수행하는 내부감사부서는 감사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회의체로 운영되며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는 일상적인 업무감사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감독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에 한계를 갖기 때문이다.

감사위원회 지원 조직의 명칭은 경영/관리, 감사, 재무/회계, 내부회계 및 감사위원회(이사회) 사무국 순이었다. 2조 원 미만 기업의 경우 재무 및 회계 부서가 감사위원회를 지원하는 비율이 높았다. 감사위원회 지원 조직 현황은 전반적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감사위원회는 현재의 지원 부서가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보좌하기에 적절한 조직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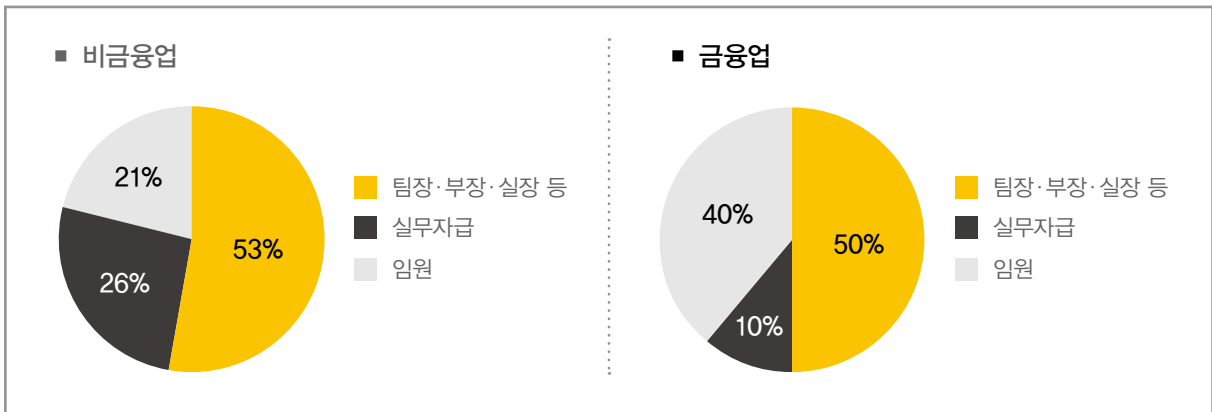
감사위원회 지원 조직 현황



*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담당 부서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므로 별도로 분석하지 않음.

한편, 감사위원회 지원 조직의 최고 직급은 비금융업의 경우 팀장/부장/실장이 5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전년도 55%와 유사한 수준이다. 2조 원 이상 비금융업의 경우 임원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기보다 감소하여 22%(전기: 25%)의 비율을 보였으며, 금융업의 경우 전기보다 약간 증가하여 40%(전기: 35%)로 나타났다. 2조 원 미만 비금융업의 경우 임원급의 비율이 19%(전기: 15%)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감사위원회 지원 조직의 책임자는 상시적으로 감사위원회의 감독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점검하고 이슈 발견 시 적시에 보고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므로, 적절한 지위와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사위원회 지원 조직의 최고 직급 분포



삼일PwC 코멘트

적절한 규모와 전문성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내부감사부서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기업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내부감사부서는 감사위원회를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의 위험 관리와 통제 감독 등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효율적인 내부감사 기능의 운영 방안을 찾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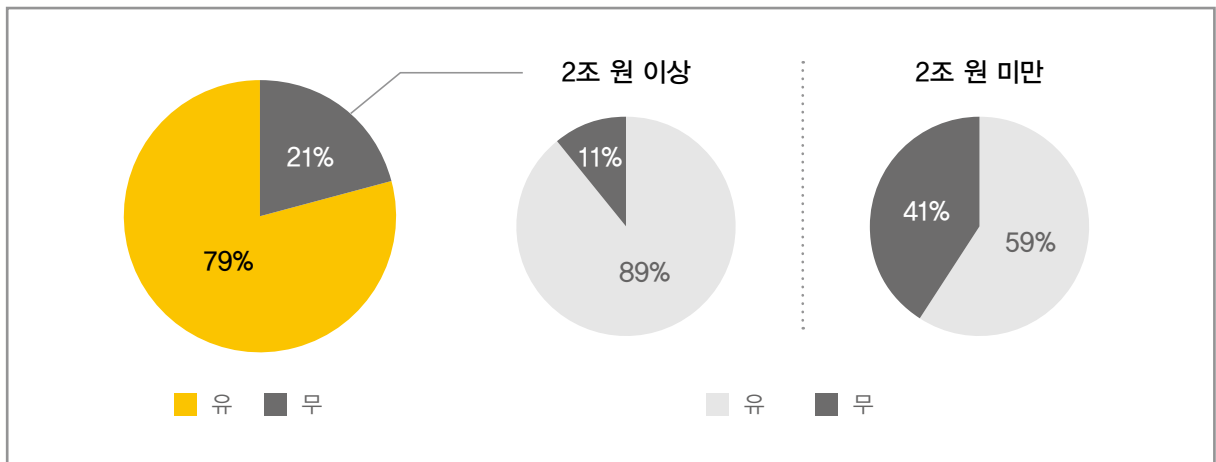
TIP!

삼일PwC 거버넌스센터가 제공하는 유튜브 동영상 '내부감사 운영 방안 제언'에서 내부감사 부서의 필요성과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2) 준법(Compliance)

최근 ESG가 기업 경영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준법(compliance)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경영진의 직무 집행이 적법한지 감사할 책임이 있는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준법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상법은 자산 5천억 원 이상의 상장사에게 반드시 준법지원인을 두도록 요구하지만, 조사 대상 비금융회사의 21%(전기: 17%) 정도가 준법지원인을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총액 2조 원 미만 비금융회사의 경우 준법지원인을 두지 않은 비율이 41%(전기: 32%)로 2조 원 이상 기업의 4배에 달했다. 반면 금융회사의 경우 모든 회사가 준법감시인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준법지원인 유무 현황 (비금융업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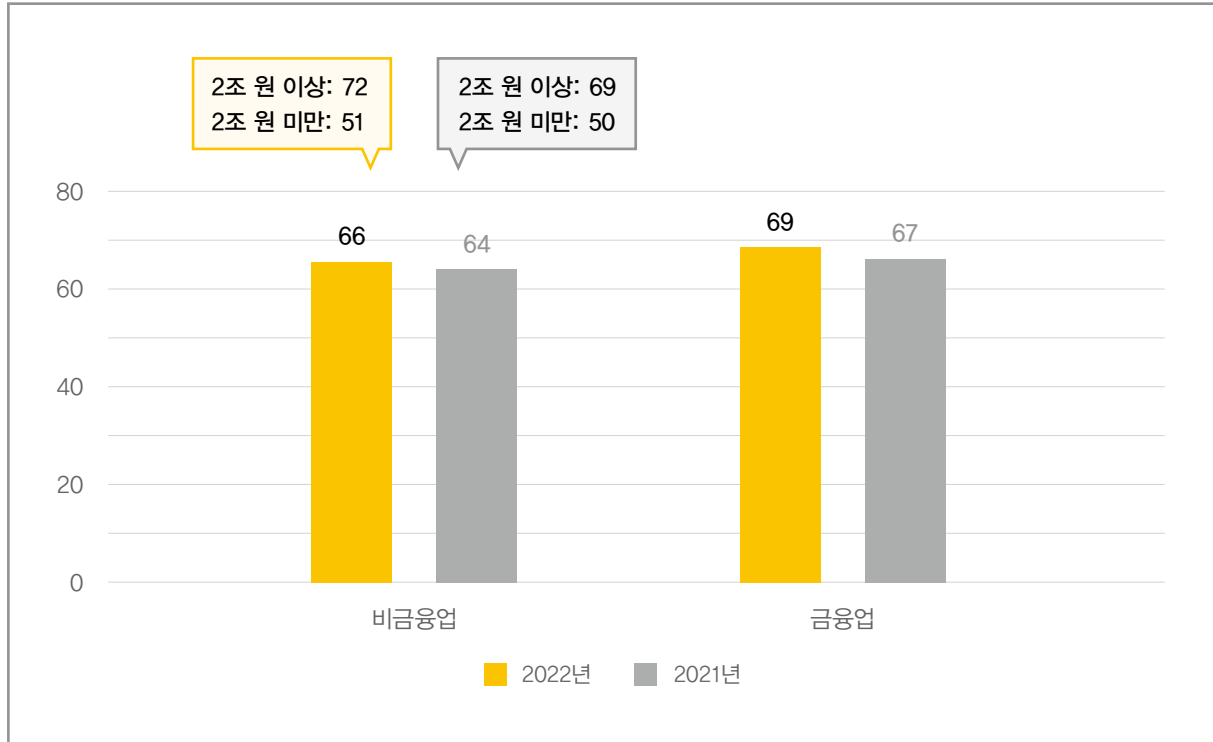


3) 감사위원 보수

분석 대상 기업 중 비금융회사의 감사위원 평균 보수는 66백만 원으로 전년도(64백만 원)보다 증가하였으며, 금융회사의 감사위원 평균 보수도 69백만 원으로 전년도(67백만 원)보다 약간 증가하였다.

감사위원 평균 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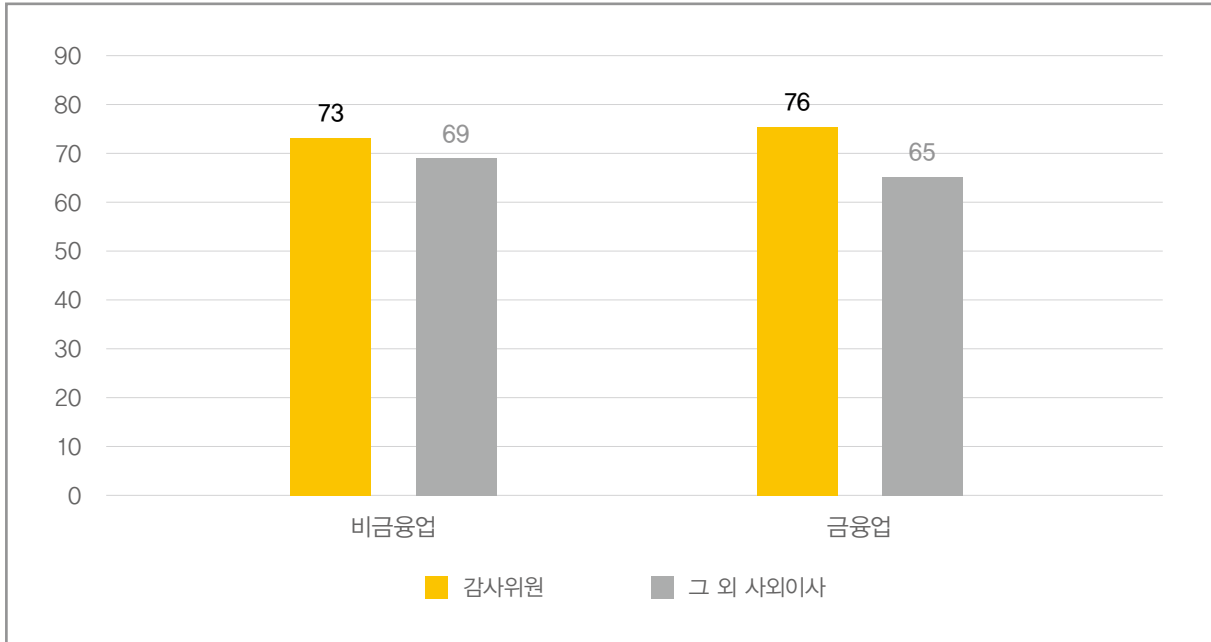
(단위: 백만 원)



그리고 감사위원회 구성원이 아닌 사외이사가 있는 회사를 대상으로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의 보수를 비교한 결과, 비금융회사는 4백만 원(전기: 5백만 원) 정도, 금융회사의 경우 11백만 원(전기: 13백만 원) 정도 감사위원 보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과 그 외 사외이사 보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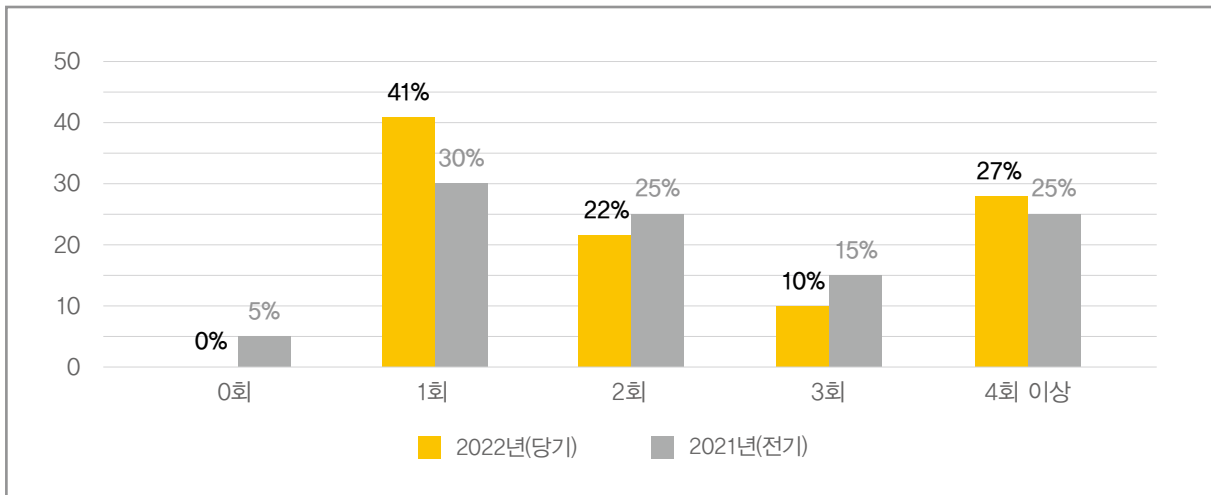
(단위: 백만 원)



4) 감사위원 교육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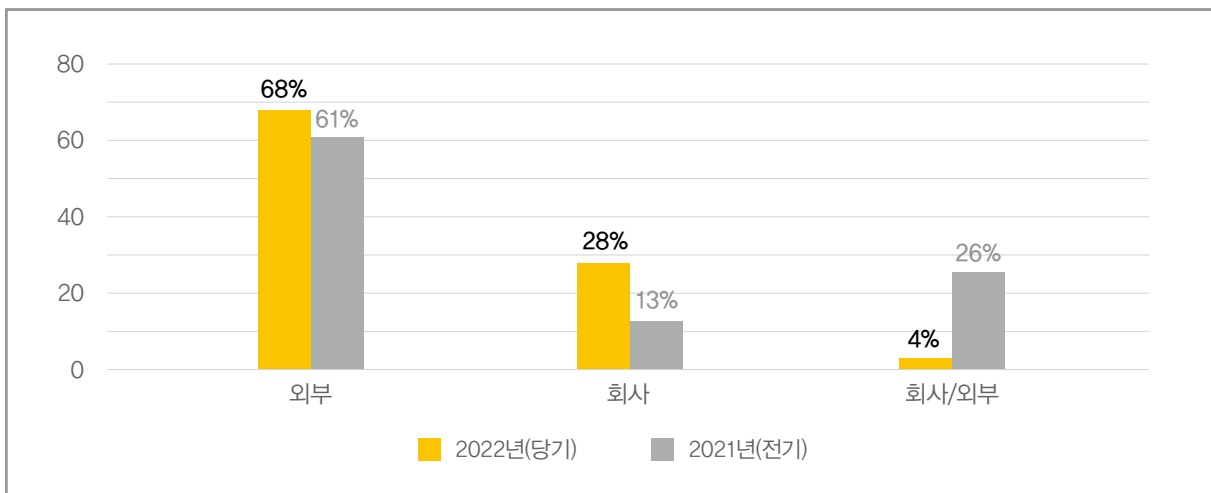
감사위원에 대한 교육 제공은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감사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된 이후 주목받는 정보이다. 모든 회사가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회 이상 교육을 제공한 회사가 59%(전기: 65%)를 차지하였다.

교육 제공 횟수



교육을 제공하는 주체와 관련하여, 외부 교육만 제공하는 기업이 가장 많았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교육의 효과와 효율성을 고려하여 기업 및 산업 상 주요 변화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의 전문가가 교육을 진행하고, 회계 및 감사 기준, 관련 법규 변화가 미치는 영향 등은 외부감사인이나 전문 교육 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제도와 시장의 변화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적시에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다면 감사위원회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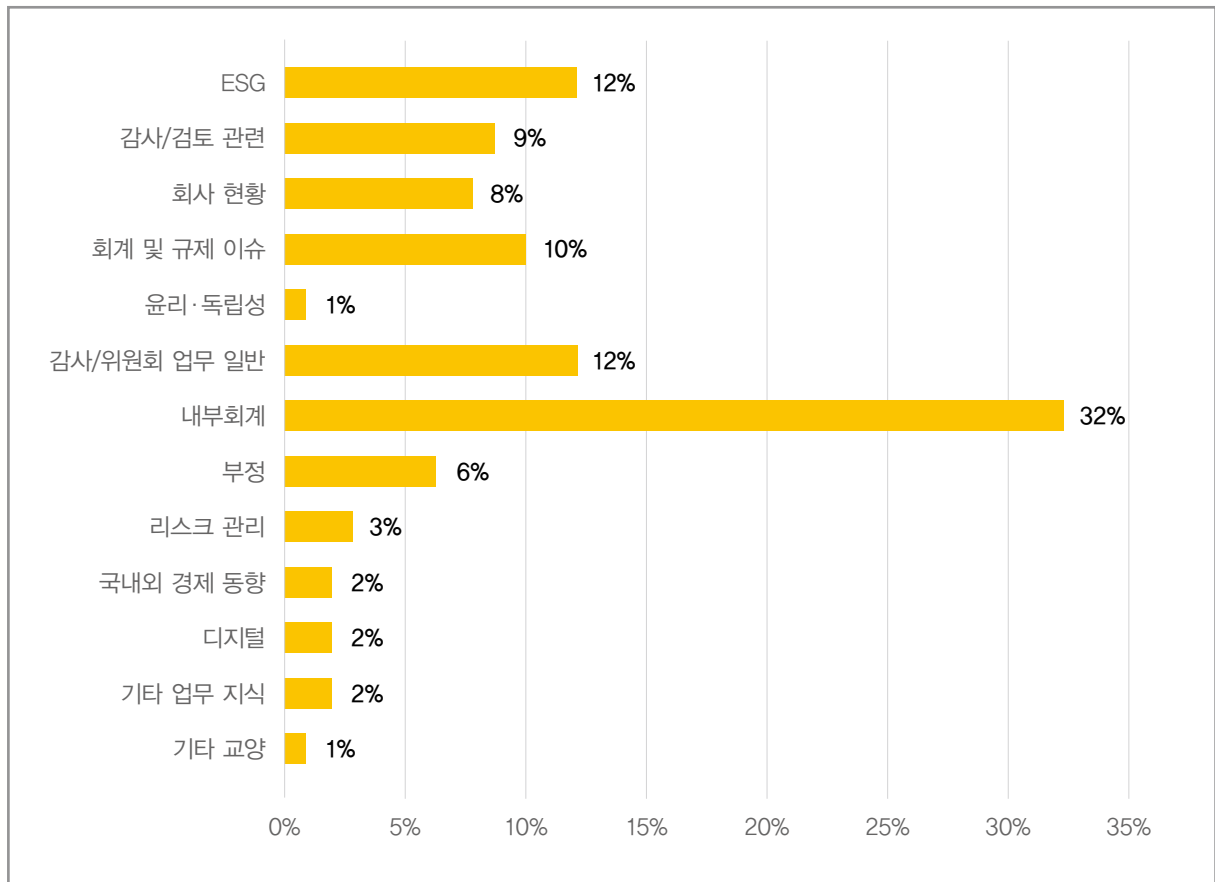
교육 실시 주체



감사위원회에 대한 교육 주제는 내부회계, ESG, 감사위원회 업무 일반이 주를 이루었다. 최근 연결내부 회계관리제도와 ESG 관련 규제 환경의 변화에 발맞춘 교육 주제 선정으로 이해된다. 다만,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일환으로 수행된 감사, 검토 관련 논의가 감사위원의 교육 주제로 공시된 경우가 상당수 발견되었는데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더해 감사위원회는 재무보고뿐만 아니라 산업, 위험 관리, 운영, 준법, 사이버 보안에 대한 전문성을 교육 주제 선정 시에 고려해야 한다. 복잡하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기업 경영 환경은 감사위원에게 종전보다 넓고 깊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ESG, 디지털 등 최신 기술에 대한 업데이트와 새로운 법규와 현안의 이해를 위한 교육은 지속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감사위원회 교육 주제



삼일PwC 코멘트

한국거래소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단순한 서면 교육자료의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한 제공은 감사위원회에 대한 교육에서 제외하며 대면 교육 혹은 화상 강의 등 대면 강의에 준하는 경우만 인정한다. 또한, 감사위원회 회의 안건을 설명한 것은 교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실질적인 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내용에 한하여 공시할 수 있다.

마치며

“

2018년 외부감사법의 완전 개정 이후,
감사위원회는 얼마나 변화했을까?

기업 내부에서는 변화를 피부로 느끼는 당사자들도 많겠지만, 공시된 정보로 이러한 변화를 탐색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존재한다. 감사위원을 위한 교육과 같이 눈에 띄는 변화도 있었지만, 보다 중요한 감사위원회 회의의 실효성, 외부감사인과 경영진을 비롯한 업무 관련자와의 충분한 논의 등은 공시 정보를 통해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른 기업지배구조 문제와 마찬가지로 감사위원회의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에 대한 하나의 정답은 없다. 다만, 법규를 준수하고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회사만의 best practice를 정립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든 회사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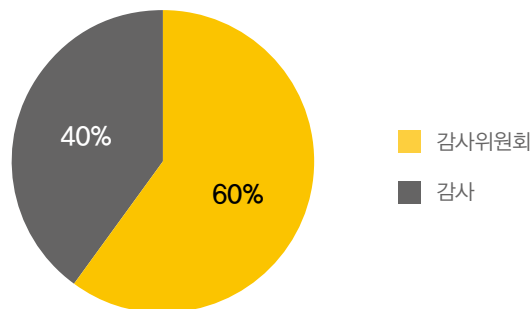
* 부록:

내부감사기구 형태(감사 vs. 감사위원회)에 따른 차이 분석

상법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만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지배구조 모범기준은 자산총액 1조 원 이상 상장사의 경우에도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경영의 복잡성과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자를 고려하여, 다양한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는 감사위원회의 형태가 더 바람직하다고 본 것이다. 또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도 감사를 설치한 기업은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 여부와 감사위원회 미설치 이유를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감사위원회가 더 바람직한 내부감사기구의 형태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본 부록은 자산 2조 원 미만 1조 원 이상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내부감사기구의 형태에 따라 독립성, 전문성, 활동성 및 운영 등의 주요 특성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분석 대상은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 78개 사, 감사를 설치한 회사 53개 사로 구성된 총 131개사와 감사위원 250명, 감사 54명(감사 2인을 둔 1개 사 포함)이다.

내부감사기구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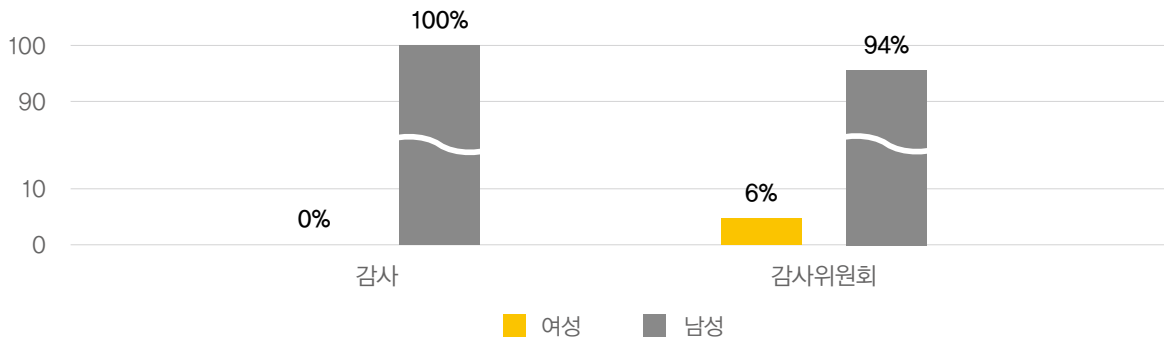


1. 구성

1) 성별

분석 대상 기업의 감사는 모두 남성으로 나타났다. 감사는 주로 1인으로 이사회처럼 성별 다양성이 주요 이슈로 다루어지지 않는 데다, 사외이사에 비해 사내의 여성 임원 비율이 낮은 국내 기업의 일반적인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기업의 경우도 여성 감사위원의 비율이 6%로 상당히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1인 이상 여성 이사를 두도록 한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 2조 원 이상 대규모 기업의 여성 감사위원 비율은 17%로, 두 배 이상의 격차를 보인다. 다만, 신규로 선임된 감사위원 중 여성의 비율은 18%로 나타나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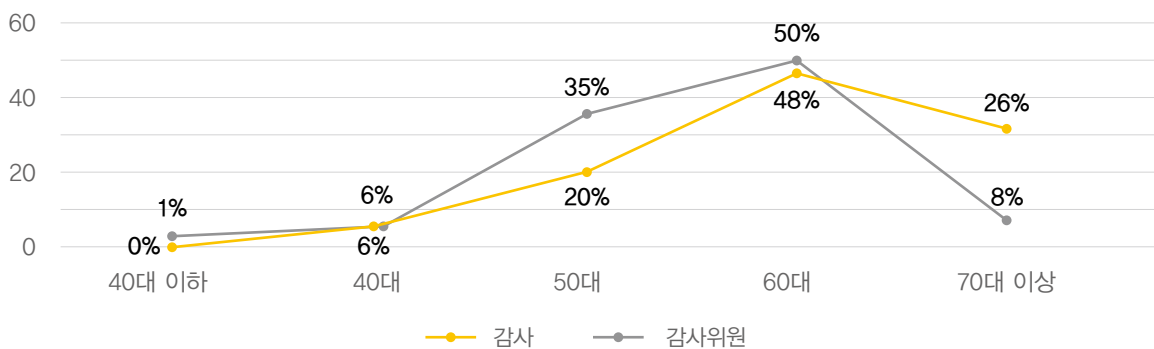
성별 비율



2) 연령

감사의 평균 연령은 64세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기업의 평균 60세보다 4세 높았다. 감사의 연령은 60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70대로서 두 연령대가 74%를 차지한다. 감사위원회의 경우 60대, 50대 순으로 주를 이루며 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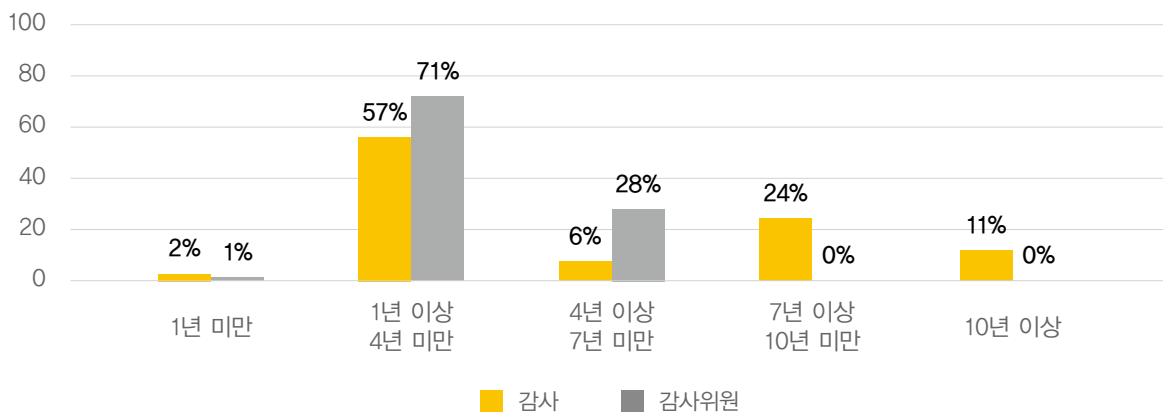


2. 독립성

1) 재직기간

감사의 재직기간 평균은 4.4년으로 나타나 감사위원의 2.6년에 비해 2년 가까이 길었는데, 이는 감사 중 7년 이상의 장기근속자가 많아서 나타난 결과이다. 감사 중 장기근속자가 많은 이유는 상법이 감사의 재직기간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경우 최대 6년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상법에서 제한을 두고 있다.

재직기간 분포



삼일PwC 코멘트

상법은 감사, 감사위원의 자격 요건을 둬으로써 선임 단계부터 독립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감사:** 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나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은 상장사의 상근감사가 될 수 없다(상법 제542조의10 제2항).
- **감사위원:** 위의 감사에 적용되는 제한은 상장사의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경우 사외이사의 독립성 요건이 모두 적용된다. 예를 들어, 해당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 최근 중요한 거래 실적이 있는 법인의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 자문이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변호사나 회계사,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자 등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3. 전문성

1) 경력 현황

감사의 주요 경력은 경영진(19%)과 금융기관(17%) 출신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계 출신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감사위원의 경력과 차이를 보였다. 감사의 경우 상근¹, 감사위원의 경우 비상근으로 역할을 수행하며, 감사위원은 내부감사기구뿐만 아니라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도 수행해야 하므로 요구되는 역량과 전문성이 다르다는 점 등을 차이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감사위원 경력 분포

	회계사	회계학 교수	CFO 등 ⁽¹⁾	재무학 교수	금융기관 출신	경영진 ⁽²⁾	학계 (기타) ⁽³⁾	관료	법률 전문가 ⁽⁴⁾	기타
2022 (총 250명)	26명	13명	5명	3명	21명	26명	49명	41명	48명	18명
	11%	5%	2%	1%	9%	10%	20%	16%	19%	7%

감사 경력 분포

	회계사	회계학 교수	CFO 등 ⁽¹⁾	재무학 교수	금융기관 출신	경영진 ⁽²⁾	학계 (기타) ⁽³⁾	관료	법률 전문가 ⁽⁴⁾	기타
2022 (총 54명)	7명	0명	1명	1명	9명	10명	3명	6명	7명	10명
	13%	0%	2%	2%	17%	19%	6%	11%	11%	19%

(*) 동 표는 각 감사위원의 최근 경력을 기준으로 1인 1개 범주로 분류하였으나, 아래 '상법상 범주에 따른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는 회사의 공시에 따라 중복 공시도 포함하여 분류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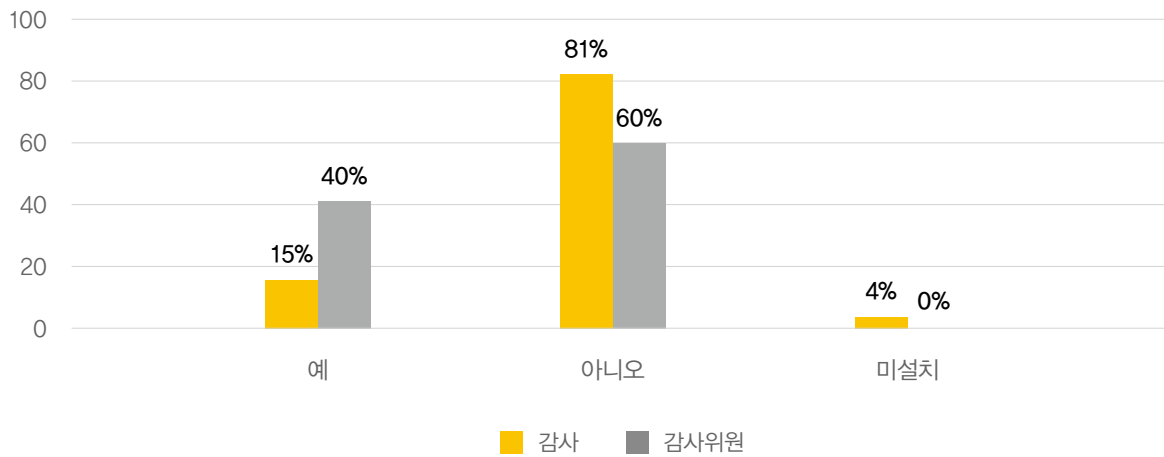
- (1) 재무팀장, 재무 관련 임원 포함
- (2) CFO 등에 포함되는 경영진 제외
- (3) 회계 또는 재무 전공 제외
- (4) 판사, 검사 변호사 및 법학 전공 교수

1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인 상장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에 상근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상근감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상법 제542조의10 제1항).

2)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현황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공시된 감사의 비율은 15%로 나타나, 40%를 차지한 감사위원과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요건은 상법에서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감사에 대해 단순 비교에서 얻는 관점은 한계를 갖는다. 다만, 내부감사기구의 핵심적인 감시·감독 분야는 재무보고와 내부회계관리제도로써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감사의 회계 또는 재무 전문성도 확보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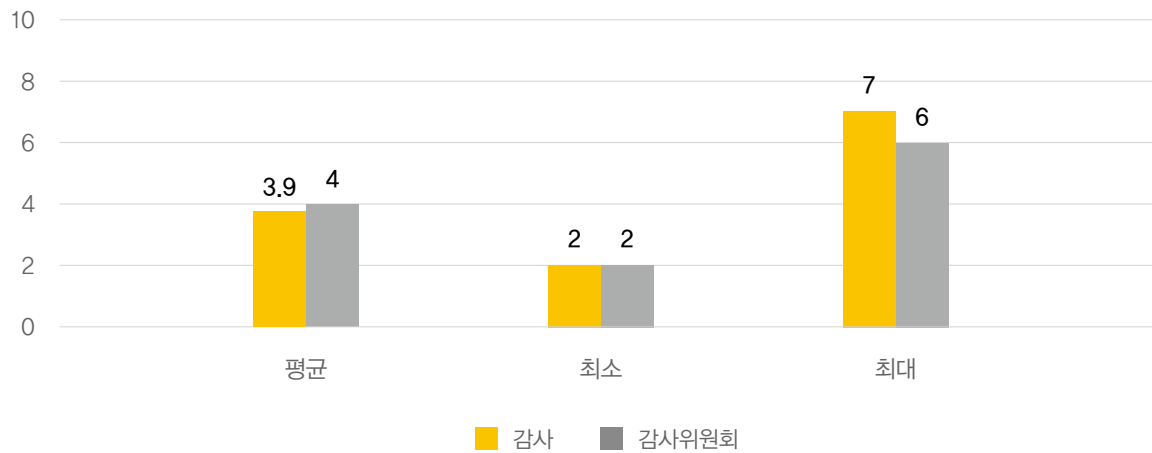


4. 활동성

1) 외부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빈도는 감사와 감사위원회 간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의 경우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 등에 따라 보고 및 논의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내부감사기구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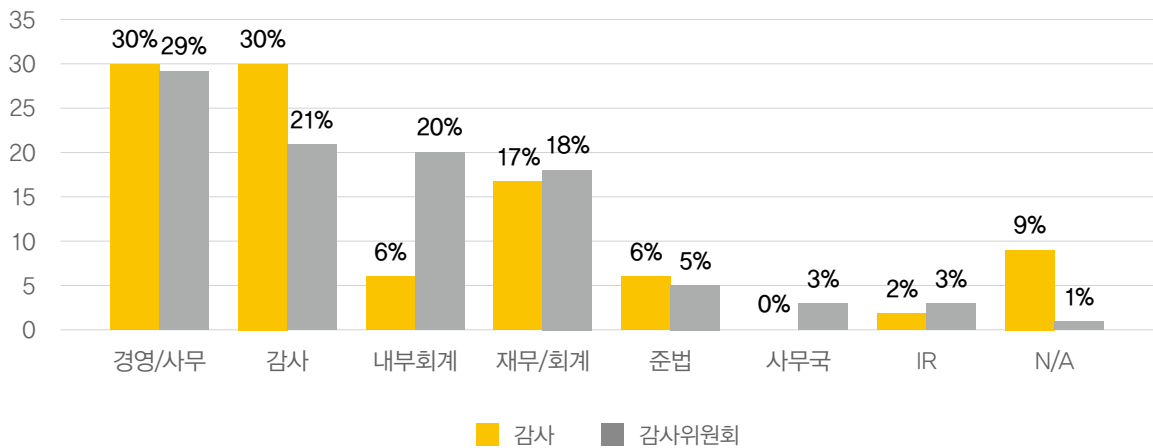
5. 운영

1) 지원 조직

주로 1인인 감사와 회의체인 감사위원회 모두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부감사부서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다만, 회사의 운영 방식에 따라 내부감사부서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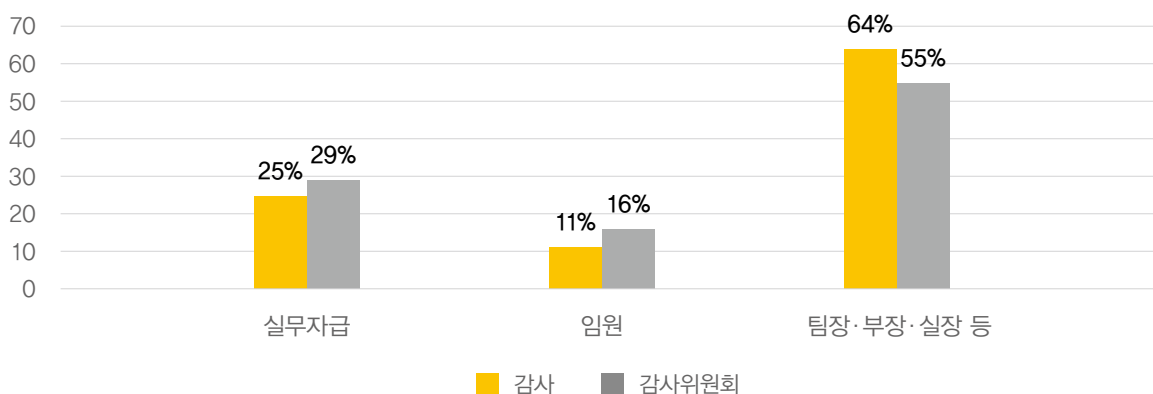
감사위원회 지원 조직과 비교하여 감사 지원 조직은 내부감사부서의 비율이 높고, 내부회계부서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조직이 없다고 공시한 회사 중에서는 감사를 설치한 기업의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다. 또한 형식적인 측면과 더불어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적인 감시·감독을 위해 적절한 부서가 지원을 하고 있는지도 점검이 필요하다.

지원 조직



지원 조직의 최고 직급 분포에 있어 임원 비율은 감사위원회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내부감사기구의 형태에 관계없이 4개 사 중 1개 사는 실무자급이 최고 직급으로 분석되어 독립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조직 최고위 직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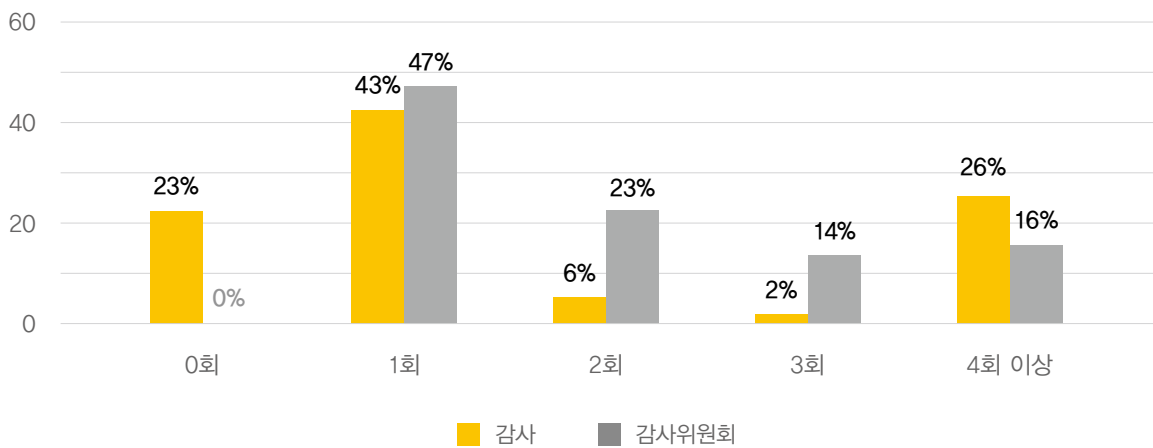
2) 보수

감사 평균 보수는 104백만 원, 감사위원 평균 보수는 51백만 원이다. 그러나 감사와 감사위원 간에는 근무 형태와 역할에 있어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므로 단순히 금액을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즉, 상근 또는 비상근의 차이, 감사위원회의 경우 회의체이므로 전체 구성원의 보수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수행하는 추가적인 임무 등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 교육 제공

감사 설치 기업의 23%가 감사를 위한 교육을 연중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감사위원회 설치 기업은 모두 연중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교육의 미실시 사유는 이미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교육이 불필요하다는 설명이 많았는데, 빠르게 변화하는 경영 환경과 법규, ESG 등 새로운 이슈의 등장은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하므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교육 실시 횟수



삼일PwC 거버넌스센터 카카오톡 채널 오픈!

삼일PwC 거버넌스센터 카카오톡 채널이 공식 오픈합니다.
기업 거버넌스의 발전을 위한 삼일PwC의 차별화된 insight,
이제 간편하게 모바일로 만나보세요.



채널이 전하는 새로운 콘텐츠

- **거버넌스 브런치** : 브런치 타임에 가볍게 접하는 거버넌스 동향과 관계 법령 변경 정보 등
- **G-큐레이터** : 거버넌스 관련 가이드나 일상 속의 거버넌스 토픽을 선정하여 소개
- **응답하는 센터** : 대화 형식의 거버넌스 관련 질의응답(FAQ)
- **센터 추천 영상** : 거버넌스센터가 추천하는 동영상 강의, 삼일 전문가 코멘트

채널 주요 기능



일정 공유

센터 소식 및
행사 일정 공유



간행물 안내

정기 간행물 발행
안내 및 공유



동향·이슈 전달

법규와 시장 동향·이슈
관련 콘텐츠 제공



교육 안내

센터 제공 교육
안내 및 영상 공유



문의하기

빠르고 쉬운
문의하기를 통한 소통

채널 친구 추가 방법

QR Code 스캔



- ① 카메라 앱을 실행
- ② 상단의 QR 코드를 스캔
- ③ 팝업창을 터치하여 채널에 접근
- ④ 채널 추가

카카오톡 친구 검색



- ① 카카오톡을 실행
- ② 친구 검색 창에서 '삼일PwC 거버넌스센터' 검색
- ③ 채널을 클릭하여 접근
- ④ 채널 추가

삼일PwC 거버넌스센터 소개

Samil PwC Governance Center

기업에 적합한 지배구조는 지속가능한 기업가치를 위한 필요조건입니다.
삼일PwC 거버넌스센터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차별화된 insight 공유를 통해
바람직한 지배구조 확립과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교육 프로그램

- **온라인 교육**
Corporate Director School (이사회 프로그램)
Audit Committee School (감사위원회 프로그램)
Topics in Focus (주제별 강의 프로그램)
- **오프라인 교육**
찾아가는 워크샵 - 이사회 구성원과 감사위원을 위한 맞춤형 교육



Publications

- **거버넌스 포커스**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정보와 insight를 담고 있는 분기별 간행물
- **트렌드 리포트**
지배구조 관련 데이터를 분석, 최신 동향과 시사점을 제공하는 보고서
- **Monthly Update**
삼일회계법인 및 유관기관의 보도자료와 발간물에 대한 월간 소식지



소통 채널 운영

- **유튜브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소통**
자료 공유, Q&A, 센터 소식 안내 등
- **Board (이사회) / Audit Committee (감사위원회) / ESG / Risk and Control (내부회계관리제도)**



Events

- 센터 주관 정기 세미나
- 삼일회계법인의 분야별 세미나
- (사)감사위원회포럼 행사

Contacts

장은균 Partner
on-gyun.chang@pwc.com

하미혜 Director
mihye.ha@pwc.com

류주연 Senior-Manager
joo-yeon.ryu@pwc.com

선준 Manager
joon.sun@pwc.com

손현정 Senior-Associate
hyunjung.son@pwc.com

이솔지 Senior-Associate
solji.lee@pwc.com

삼일PwC 거버넌스센터



02-709-0709



kr_sgc@pwc.com

sgc.samil.com

S/N: 2305W-RP-018

© 2023 Samil PwC.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PwC network and/or one or more of its member firm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